

---

제주관광대학교  
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

---

2025. 05. 23.

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# 입주기업 모집공고

제주관광대학교에서 신기술 및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도내 예비창업자 및 중소(벤처)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5년 05월 23일  
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

## 1 신청대상 및 절차

### 1. 신청대상

가.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예비기술 창업자

나. 창업 3년 이내의 중소(벤처) 기업

다. 제외사항

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및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,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(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의거: [붙임1] 참조)

### 2. 신청 기간 및 절차

가. 신청방법

1) 신청기간 : 2025.05.23. ~ 2025.06.07

2) 제출서류 : 입주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(해당자에 한함)

3) 제출방법 : 행정실 방문 제출 및 Email 제출 ([yj2jin@gmail.com](mailto:yj2jin@gmail.com))

나. 평가일정

- 1) 1차 서류전형
- 2) 2차 면접심사 및 발표심사
- 3) 평가항목 : 창업자 역량, 기술성, 사업성 등
- 4) 심사일정 :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
- 5) 합격자 개별 연락

※ 발표, 질의응답 05분 ~ 15분, 발표자료 및 USB 필참.

### 3. 우대사항

- 가. 우수한 기술 아이템 보유로 인해 특허 및 인증을 획득하거나 획득 계획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
- 나. 국가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(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&D성공기업포함)
- 다. 식품제조기업 등 제조 허가가 요구되는 기업
- 라. 재학생 및 청년창업자

### ※ 입주신청 불가능 한 대상

제주관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 제25조의 의하여 (입주승인 제외대상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규제중인 자
2. 환경위해 업종 영위자
3. 타 기관의 창업보육센터 또는 창업지원기관 입주자
4. 지원제외 대상 업종

## 2

## 입주내용

### 1. 입주기간

가. 매년 평가를 통하여 1년씩 연장 가능

나. 공실

보육실 공간(m <sup>2</sup> )	보육실 수	비고
66m <sup>2</sup>	2실	본관 1실, 별관 1실
59m <sup>2</sup>	1실	별관 1실
33m <sup>2</sup>	1실	별관 1실
합계	4실	별관 3실, 본관 1실

### 2. 입주부담금

가. 임대료

1) 전용면적(3.3m<sup>2</sup>)×22,000원(VAT별도)

2) 1년차 3.3m<sup>2</sup>당 22,000원, 2년차 23,500원, 3년차는 25,000원 등으로 월임대료는 년차에 따라 차별적용

나. 보증금 : 전용면적(3.3m<sup>2</sup>)당 150,000원

다. 전기료 : 입주업체에서 실사용량에 대한 요금 징수

라. 주차료 : 무료

### 3. 입주기업 지원 분야

가. 기술 개발, 기업 홍보, 판로

나. 기업 및 지원 기관 실무자와의 네트워크 구축

다. 박람회(전시회) 참가비, 홈페이지 등 홍보물 제작비

라. 지적재산권 출원/등록비, 벤처기업, 이노비즈 인증

마. 세미나실, 교육실, 회의실 무료 사용 및 기타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수시상담 등

### 3 문의처 및 유의사항

#### 1. 문의처

가.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강유진 (창업보육센터 1층 사무실)

나. 전화 : 064-740-8857

다. 메일 : yj2jin@gmail.com

#### 붙임1]

#### 지원제외 대상 업종

No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*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gambling 및 베팅업	9124
7	기타 개인 서비스업(산업용 세탁업은 제외)	96
8	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